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이연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68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9.

발의자 : 이연희 · 김정호 · 전용기

정준호 · 문진석 · 박해철

한민수 · 이강일 · 복기왕

임호선 · 송재봉 · 허종식

한준호 · 안태준 · 문금주

김남희 · 이정문 · 박상혁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시키는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종합적 ·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, 「건축물관리법」, 「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등의 법률을 통 · 폐합하여 「빈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을 제정하는 바, 빈 건축물 정비 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 ·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현행 법의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제2호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·복기왕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1521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2호(8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(8) 「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빈 건축물
정비사업

별표 제2호(38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(38) 「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35조의2에 따라 토지 등
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